### 제21장 보칙

<본장번호변경 2006.9.14., 2013.2.28., 2014.11.3., 2014.12.31., 2022.12.27., 2023.8.30., 2024.10.8., 2024.10.29., 2025.7.10.>

- 제21.1조(시장기능정지 요청) ① 전력거래소는 천재·지변·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력거래의 정지·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전기사업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전력거래의 정지·제한을 명한 경우의 세부운영 절차는 별표24와 같다.[신설 2012.12.31]
- 제21.2조(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닌 발전기를 보유한 회원의 전력거래 및 정산) ① 전력 거래소는 비중앙급전 발전기와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회원의 시간 대별 발전전력량 및 충방전 전력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시간의 계통한계가격과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작은 값으로 정산하며 공급가능용량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단, 100kW 미만 비중앙급전 발전기와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회원의 시간대별 발전전력량 및 충방전 전력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시간의 계통한계가격으로 정산한다. 〈항번호변경 2005.10.10.〉 〈개정 2016.5.12., 2022.11.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은 별표2 및 별표33에 따른다. <개정 2005.10.10., 2024.2.13.>
  - ③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운영하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에 대해 전력계통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급전지시 할 경우 전력거래소는 대용량 발전기 탈락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0.6.30.]
  - ④ 비중앙급전발전기의 경우 최초 전력거래 개시 승인일로부터 전력거래가 가능하며, 최초전력거래개시 승인일 이전발전량에 대해서는 전력거래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1.1.1.] <개정 2024.2.13.>
  - 1. <삭제 2024.2.13.>
  - 2. <삭제 2024.2.13.>
  - 3. <삭제 2024.2.13.>
  - ⑤ <삭제 2024.2.13.>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7조에 따라 고정가격계약으로 체결한 발전기의 경우에는 고정가격계약의 정산상한가격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신설 2022.12.27.]

- ⑦ 비중앙급전시운전발전기는 비중앙급전발전기의 정산을 따른다. [신설 2024.2.13.]
- 제21.3조(시운전 전력) ① 시운전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회원은 전력거래소에 주간, 일간 시운전발전계획을 다음의 일정 및 시각에 맞도록 별표 4에 따라 제출하여 야 하다.
  - 1. 최초 계통연결계획 : 계통연결 2개월 전까지
  - 2. 월간 시운전발전계획 : 거래월의 전월 20일까지
  - 3. 주간 시운전발전계획 : 거래주의 전주 수요일까지 <개정 2016.12.30.>
  - 4. 일간 시운전발전계획 : 거래일의 전일 11시까지 <개정 2021.1.1., 2021.12.28., 2022.6.30.>
  - ② <개정 2003.9.18.> <삭제 2019.05.31.>
  - ③ 전력거래소는 시운전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안정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운전 계획에 따라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발전계획수립시 우선 반영하여야 하며, 시운전 전력은(정비중인 발전기 시험운전 포함) 예비력 수준 또는 출력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실시간 공급능력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3., 2021.1.1>
  - ④ 시운전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되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운전개시 신고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입찰한 전력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다. <개정 2003.9.18., 2007.7.23., 2021.1.1>
  - ⑥ 전력거래소는 시운전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한 가격은 제2.4.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계통한계가격을 적용하여 별표2 시운전 전력의 정산 규정에 따라 정산하며, 공급가능용량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06.12.26, 단서삭제 2008.4.22><항번호 변경 2007.7.23.> <개정 2022.11.30.>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은 별표 2.7 시운전 전력의 정산 "가"에 따른다. <항번호변경 2007.7.23.> <개정 2021.1.1>
  - ⑧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통 위원회에서 기술적 특성자료에 대한 의결을 거치고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발전기운전비용에 대한 의결을 거친 시운전발전기를 보유한 발전회원에게 시운전계획에 관계없는 발전출력지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03.9.18.] <항번호변경 2007.7.23.> <개정 2019.12.31., 2021.1.1., 2021.7.1.>
  - ⑨ 제8항에 따른 지시를 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는 3일전까지 해당 발전회원에 게 이와 관련된 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이를 통지하여 시운전을 계속토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3.9.18.] <항번호변경

#### 2007.7.23>

- ① 제9항의 통지가 있을 경우, 발전회원은 급전지시가 예정된 거래일에 대해 초기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격결정발전계획담당자는 해당발전기의입찰을 가격결정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9항의 통지시점이 해당거래일의 초기입찰 마감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2003.9.18] <개정 2007.7.23., 2021.1.1>
- ① 제8항의 지시가 있는 경우, 해당 발전기에 대한 정산은 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한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단, 제10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로 발전하였을 경우에는 별표2의 7. 다호에 의해 정산한다. [신설 2003.9.18.] <항번호변경 2007.7.23.> <개정 2021.1.1.>
- ② 전기저장장치의 시운전에 대한 사항은 제18.3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발전기에 대한 규칙을 준용하며 제8항의 지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정산은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에 대한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단, 제10항에 의한 입찰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단, 전기저장장치가 시운전 시 충전을 위해 사용한 전력은 해당 거래 시간의 계통한계가격과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작은 값으로 정산한다. [신설 2016.5.12.] <개정 2022.11.30.>
- 제21.4조(상업운전개시 신고) ① 시운전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상업운전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업운전개시 예정 3영업일 전까지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전력거래소에 별지 제81호서식의 상업운전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 상업운전개시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7.7.23.] <개정 2024.2.13.>
  - 1. 신청서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2.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첨부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3. 등록하고자 하는 설비가 법 및 규칙에서 정한 설비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4. 규칙에 따른 설비의 계통연결을 위한 기술검토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② 비중앙급전시운전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의 준비기간이내에 법 제 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 후 10영업일이내에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전력거래소에 별지 제81호서식의 상업운전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 각 호의 경우 상업운전개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 ③ 시운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시운전발전기의 제1항 각 호의 상업운전개시신 고 반려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 30일이내의 유예기간을 두며, 그 이후에

는 요건 충족시까지 전력거래가 정지된다. 이 경우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와 송·배전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발전사업자와 송·배전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력거래소로부터 문서로 통보받을 때까지 전력공급을 중단하도록 계통분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④ 제2.1.1.5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업운전 개시 전에 비용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30.] <항번호변경 2024.2.13.>

# 제21.5조(사용전 검사필증 제출) <삭제 2024.2.13.>

- **제21.6조(전력거래사)** ①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다음 각호 1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력거래사에 관한 자격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 1. 전기사업자의 입찰 등 전력거래 업무의 수행 또는 대행
  - 2.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운영 및 전력거래업무 수행
  - 3. 직접구매자의 입찰 등 전력거래 업무의 수행 또는 대행
  - 4. 전기소비자의 전력거래업무 대행
  - 5.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의 위험관리 등 재무적 전력거래업무 수행 또는 대행
  - 6.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의 선물, 선도, 옵션, 스왑거래 등 전력거래 파생 상품 관련업무의 수행 또는 대행
  - 7. 전력거래와 관련한 컨설팅, 자문, 상담 등 전력거래 지원업무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② 전력거래소, 전기사업자 또는 직접구매자가 고용한 전력거래사의 업무상 행위는 전력거래소, 전기사업자 또는 직접구매자의 행위로 본다.
  - ③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제정·시행할 수 있다.〈조번호 변경 2007.7.23, 2012.5.31〉
- 제21.7조(승인) ① 전력거래소는 제2.2.1.4조의 규정에 의거 비용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연료의 열량단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 2. 기동비용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호번호변경 2009.06.30>
  - 3. 기준용량가격보정계수(β값의 적용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4.9.24, 2006.12.26><호번호변경 2009.06.30>
  - 4. 정산조정계수를 변경하는 경우[신설 2006.12.26], <개정 2008.4.22, 2012.5.31>

- 5. 기타 거래가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심의한 경우<목번 호변경 2006.12.26><호번호변경 2009.06.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위원회가 심의한 자료는 제2.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하여 승인하거나 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항에 한하여 그 통지가 전력거래소에 접수된 날의 익일 0시부터 변경승인 또는 불승인의 효력이 개시한다. <개정 2019.05.31>
- ③ 전력거래소가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번호변경 2007.7.23〉
- 제21.8조(보고) ①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 야 한다.
  - 1.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위원회 심의결과
  - 2. 제2.1.1.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발전기의 발전비용요소
  - 3.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요예측
  - 4.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결과
  - 5.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가격
  - 5의2.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상한가격 <개정 2013.2.28.>
  - 6. 제2.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용량가격
  - 7.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구매내역 <개정 2005.1.21>
  - 8. 제3.2.1.4조 및 제3.3.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계수 <개정 2005.1.21>
  - 9. 제3.2.1.8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구매 용량보정계수
  - 10. 제3.2.2.2조 및 제3.2.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구매의 신청 및 승인
  - 11. <삭제 2025.4.9.>
  - 12. 제3.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 설정
  - 13. 제10.1.1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설비 설치현황
  - 14. 제4.2.5.4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월간) <개정 2005.1.21>
  - 15. 제4.2.5.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개정 2005.1.21>
  - 16.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은행의 지정결과
  - 17. 제4.3.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은행과의 약정체결 결과
  - 18. 제4.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은행의 지정해지 결과
  - 19. 제5.1.1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 수립 결과 <개정 2021.1.1>
  - 20. <삭제 11.12.2>

- 21. 제5.8.2조(전력계통 운영방안 수립)의 규정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방안 <개 정 2025.2.11.>
- 22. 제5.8.8조 규정에 의한 고장조사보고
- 23.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 정지 및 휴전계획 조정 결과
- 24. 제5.9.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전망
- 25. 제7.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 26. 제8.2.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위원회 심의결과
- 27. 제9.1.2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개정 결과
- ② 전력거래소는 제2.3.1조(입찰서의 제출)의 규정에 따른 발전기입찰자료가 명백히 허위제출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5.3.1조(급전지시)의 규정에 따른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해당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5.8.2조(전력계통 운영방안 수립)의 규정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방안을 전기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1.>
- ③ 감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6.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감시계획
  - 2. 제6.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감시기준 및 시장감시지표
  - 3. 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내용
  - 4. 제6.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감시보고서
  - 5.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시정조치 내용
  - 6. 제6.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제재금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내용<조번호변 경 2007.7.23>

## 제21.9조(실시간급전계획 수립) <삭제 2014.10.2.>

- 제21.10조(전력가격 안정 등에 대한 조치) <조번호 변경 2014.10.2.> ① 발전사업 자의 전력거래대금은 '별표23'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발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5.31., 2015.9.30.>
  - 1.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를 받는 판매사업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자가 소유한 원자력, 석탄, 국내탄 및 일반 중앙급전발전기
  - 2. <삭제 2015.9.30>
  - 3.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중앙급전 석탄발전
  -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받는 시점은 제1항의 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의 지분 50%를 초과 취득한 시점으로 한다.
  - ③ <삭제 2012.5.31.> [본조신설 2008.4.22]

### 부 칙 (2001. 3. 30)

제1조(전력거래개시) 이 규칙에 의한 전력거래개시는 200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발전비용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 운전비용 및 기술적 특성자료의 적용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한 전력시장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2001.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1.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제3호 정산기준중 10. 기타정산의 "마"는 2001년 4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부 칙 (2002,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4장 제3절(직접구매제도와 관련된 조항에 한함)의 규정은 2003.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 별첨 및 세부운영기준의 폐지)** ① 이 규칙 시행전의 별첨 1을 별표 1로 하고, 별첨 3을 별표 2로 하고, 별첨 4를 별표 3으로 하며, 별첨 1 내지 별첨 4는 이를 폐지한다.

② 세부운영기준이 규칙에 통합됨에 따라 이 규칙 시행전의 세부운영기준 중 전력수 요예측절차서를 별표 5로 하고, 입찰운영절차서를 별표 4로 하고, 가격결정발전계 획수립절차서를 별표 6으로 하고, 계량절차서를 별표 7로 하고, 정산절차서를 별표 8로 하고, 시장시스템운영절차서를 별표 22로 하고, 운영발전계획수립절차서를 별표 9로 하고, 실시간급전운영절차서를 별표 11로 하고,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를 별표 12로 하고, 연료제약발전기운영절차서를 별표 10으로 하고, 발전기정지및휴전업무절차서를 별표 18로 하고, 고장파급방지시스템적용절차서를 별표 14로 하고, 계통보호절차서를 별표 16으로 하고, 기기번호부여절차서를 별표 15로 하고, 계통운영시스템운영절차서를 별표 13으로 하고, 계통운영보조서비스절차서를 별표 19로하고, 발면전소주변압기텝정정및유효접지검토절차서를 별표 20으로 하고, 발전기병 렬운전및공급방안업무절차서를 별표 21로 하고, 고장조사처리절차서를 별표 17로하며, 전력수요예측절차서, 입찰운영절차서, 가격결정발전계획수립절차서, 계량절차서, 정산절차서, 시장시스템운영절차서, 정보공개절차서, 운영발전계획수립절차서, 실시간급전운영절차서,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 연료제약발전기운영절차서, 발전기정지및휴전업무절차서, 고장파급방지시스템적용절차서, 계통보호절차서, 기기번호부여

절차서, 계통운영시스템운영절차서, 계통운영보조서비스절차서, 발·변전소주변압기탭 정정및유효접지검토절차서, 발전기병렬운전및공급방안업무절차서, 고장조사처리절차 서, 발전비용평가위원회운영규정, 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규칙개정위원회운영규정 은 이를 폐지한다.<개정 2010.6.30>

제3조(도매전력시장 모의운영규정) ① 전력거래소는 수요측과 공급측의 경쟁을 통하여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전력시장(이하 "도매전력시장"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개설과 도매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구축을 위하여 모의로 도매전력시장(이하 "모의도매전력시장"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하는 발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와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모의도매전력시장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의도매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전력거래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모의도매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모의운영기간에 적용할 "도매전력시장 모의운영규정"을 산업 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제정·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5.31>

제4조(세부운영기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세부운영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진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모든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중 분쟁조정비용 및 예납기준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제7.3.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 정비용 및 예납기준으로 본다.

제5조(별첨의 인용조문 및 용어정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세부운영기 준에서 인용하였던 조문 및 용어는 이 규칙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된 규칙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비용위원회의 위원 및 실무협의회 회원을 제외한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 및 정보공개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일에 만료한다.

제7조(발전비용평가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설치된 발전비용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비용평가위원회로 변경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전비용평가위원회(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에서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03. 5. 7.)

(시행일) 본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단, 명백한 오류의 정정(제

2.2.1.1조 제1항 제2호, 별표 2, 별표3,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9의 개정부분과 별표 8의 7.11.2.1, 7.11.3.1, 별지 제23호 및 제25호 서식)은 2002년 11월 15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부 칙 (2003.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전력에 관한 급전지시의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5.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소는 송전단 기준 급전지시가 불가능한 발전기에 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전단 기준 급전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자는 제5.4.1조 내지 제5.4.7조에서 정한 연간발전기정지계획에 의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정지한 뒤, 계통에 다시 연결하는 발전기에 대해서 계통연결 이전에 전력거래소의 송전단 기준 급전지시에 응동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여야 한다.

## 부 칙 (2004.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4.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4. 9.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4. 9. 24.)

**제1조(시행일)** 별표2 I. 1. 나. 3), I. 2. 다. 및 I. 10. 나. 2)의 규정은 비용위 원회에서 기준용량가격보정계수(an, ac, a)를 의결하여 시행하는 날로부터 시행한 다.

### 부 칙 (2004.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하되, 제2.1.1.3조,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8 및 별지서식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4. 12. 21.)

이 규칙은 200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5. 1. 21.)

이 규칙은 200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5. 5. 30.)

이 규칙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5, 10, 10.)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11.3의 규정 삭제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의 입찰마감시간 이후 변경입찰 유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2006.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제2절 및 제4절, 별표2의 9. 가. 1), 2) 개정 규정은 2006.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13의 8.1.1.1 개정 규정은 2008.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154kV 변전소의 자료취득시간 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송전 및 발전사업자는 별표13의 붙임8.1.2.1에 규정된 154kV 변전소에 대한 계통자료 취득주기 단축과 붙임8.1.1.3 및 8.1.1.4에 규정된 제주지역 발·변전소 자료의 직접취득을 위해 규칙 시행일로부터 관련 설비를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이 완료된 지역계통운영센터의 154kV 변전소 및 제주지역 발·변전소부터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송전 및 발전사업자는 지역계통운영센터의 관련 설비보강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주지역 발·변전소 관련 설비보강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부 칙 (2006.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V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06.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2조, 제2.3.3조, 제2.4.1조, 제2.4.2조, 제3.1.1조, 제3.1.2조, 제3.2.1.2조, 제3.2.1.4조, 제3.3.2.2조, 3.3.2.4조, 제4.4.1.2조, 제5.5.3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거래일 기준)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탄발전기의 기준용량가격 결정) 국내탄발전기 변동비지원에 대한 전기사

업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개정전까지는 국내탄 발전기에 대해 별도의 기준용 량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준용량가격은 타 발전기의 기준용량가격과 함께 비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및 공개한다.

제3조(용량가격계수 산정을 위한 자료취득의 경과조치) ① 제2.4.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지역별 최대부하 및 공급용량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지역별 예측수요 및 실효공급용량을 적용한다.

② 제 2.1.1.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별 2007년도 상업운전개시계획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적용한다. 또한 제4.2.1.2조의 단서조항인 상업운전예정일 이전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금 불지급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정산시스템 개발지연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시행일 직전까지 거래소의 정산시스템 보완 및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 정산기준을 적 용하여 우선 정산하고 정산시스템 보완 및 개발이 완료된 후 정산금을 조정한다.

② 이 경우 제4.2.5.3조 및 제4.2.5.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는 초기정산 및 최종 정산 내역중 정산기준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전력거래소가 전체적으로 정산금을 재계산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때 제4.2.5.5조에도 불구하고 최종정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거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수전전력 기본요금 관련 경과조치) 수전전력 기본요금 환급절차폐지는 2007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6년에 발생한 수전전력 기본요금의 정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급전전화장치 기능보강에 대한 경과조치) 전기사업자는 별표13, 붙임8.3, 8.3.6조 관련으로 급전전화 장치의 자동응답기능 및 강제 할입기능 구현을 위해 관련설비 보강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부 칙 (2007. 7.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력거래자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전력거래소 회원으로서 전력거래를 하던 자는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전력거래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발전기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중앙급전기 또는 비중앙급전발전기로 운전 중인 발전기는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중앙급전발전기 또는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력량계 프로토콜 관련 경과조치) 별표7, 8.1의 "전력량계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전력계통자료 취득을 위한 통신회선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송전사업자는 별 표13. 붙임8.3의 제8.3.3호 개정에 따른 설비보강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완료

하여야 한다.

제6조(급전전화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송전사업자는 별표13. 붙임8.3의 제8.3.4호 개정에 따른 설비보강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부 칙 (200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된 구역전기사업용 발전기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2003.12.30, 법률 제7017호> 제2조에 의해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어 2004년 7월 1일 이전부터 전력거래소에 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되어 운전중인 구역전기사업용 발전기는 중앙급전발전기로 본다.

제3조(용량가격계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도에 적용하는 용량가격계수는 제2.4.3조 제4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당해 년도 및 2007년도 용량가격계수의 2 개년도 평균치를 적용한다. <개정 2016.10.31.>

## 부 칙 (2008.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시스템 보완을 위한 경과조치) ① 전력거래소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시스템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제4.2.5.3조 및 제4.2.5.5조에도 불구하고 제21.10조의 적용을 받는 거래 당사자는 초기정산 및 최종정산 내역 중 별표 23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 및 이의신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전력거래소가 전체적으로 정산금을 재계산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때 제4.2.5.5조에도 불구하고 최종정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90일 이내로 한다.

## 부 칙 (2008.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 및 별표7의 7.1.6, 8.3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제주지역 154kV 변전소 자료취득 이중화 관련 설비 보강에 대한 경과조치) 송 전사업자는 별표13, 붙임8.1의 제8.1.2.4호 개정에 따른 관련 설비보강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붙임8.3의 제8.3.4호의 급전전화 설치는 동 규칙 개정 이후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부 칙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계획시스템 보완을 위한 경과조치) ① 전력거래소는 규칙개정일부터 1 년 이내에 제2.4.2조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발전계획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발전계획시스템을 적용하여 변경된 한계가격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정산금의 연간총액은 별표23 6.0을 통해 열병합발전사업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연간정산금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전력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방안을 강구한 후에 제2.4.2 조, 별표2 1.가 제2항, 별표4 7.11.6, 별표6 6.1.1, 6.1.2를 시행한다.

제3조(적용범위) 별표23 6.0의 열병합발전지원대상 발전기라함은 타에너지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어 전기사업법 제49조에 따라 2009.12.31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열병합발전기로서 서울화력, 일산복합화력, 분당복합화력발전소에 한한다.

## 부 칙 (201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9조는 2011년 12월 4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0.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측 송전요금에 대한 경과조치)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발전측 송전요금은 제4.3.2조, 제4.3.3조, 제4.3.4조, 제4.3.6조, 별표8 및 별지9, 40, 41 서식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송전사업자가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에 관련규정을 마련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2010. 12. 28.)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점에 대한 경과조치) 제5.7.1조 및 별표2, 별표6의 양수발전기 펌핑수요 반영과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양수발전기 정산규정의 적용시점은 현재로부터다음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진 익월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 실시간 공급능력 추가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발전사업자는 별표13 붙임8.1.1.1 관련으로 발전기 실시간 공급능력 추가 제공을 위한 관련 설비보강을 2013. 12. 31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규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전기사업자는 별표13, 7.2.4.2, 7)항의 신규설치 또는 교체보강 설비의 규격을 2013. 7. 1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3.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간)** 제2.4.4조의 정산상한가격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3.17.>

## 부 칙 (2013.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도에 따른 변경입찰에 대한 경과규정) 별표4의 제6.3.7.5.3조 규정에 의한 기상청 예보온도 변경에 따른 변경입찰은 입찰시스템의 보완·개발기간을 고려하여 2013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 수력 및 양수발전기 입찰방식 변경 경과조치) 제2.3.2조 규정, 별지 제 31호 및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복합, 수력 및 양수발전기 입찰방식 변경은 차세대 EMS 시스템 도입시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4.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세대 전력IT시스템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 중 일부 경과조치) 제5장 제2절, 제3절 제5.3.4조, 제10장 제2절 제10.2.1조 1항 2호, 제12장 보칙 제12.9조 개정 사항은 차세대 전력IT시스템(EMS)으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4. 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간 사용전력량 감시) 제12.2.3조 제2항 제4호의 5분 단위의 사용전력량

을 검침할 수 있는 감시기기 설치 규정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시간 사용전력량 데이터의 취득 및 활용) 전력거래소는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15분단위의 실시간 사용전력량 데이터를 등록시험, 전력거래 제한 요건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의 취득 및 활용) 전력거래소는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를 수요반응자원의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용량가격계수 적용) 2015년도에 적용하는 용량가격계수의 지역별 최대부하는 제2.4.3조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하계 최대부하 시간대의 해당지역 중앙급전발전기 발전량에 융통전력량과 당해연도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의 50%를 합한 값에 직전 3년간의 지역별 최대부하 평균 증가율을 곱하여산출한다. <개정 2016.10.31.>

제6조(자체기동발전기 서비스 가능여부 입찰 신설에 대한 경과조치) 자체기동발전기 서비스 가능여부에 대한 입찰 신설을 위한 제2.3.2조, 별표1, 별표2, 별표4 개정 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자기제약발전 정산시 허용오차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자기제약발전 정산시 허용오차 적용을 위한 별표2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자율제재금 부과기준 변경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자율제제금 부과기준 변경을 위한 제6.4.6조 1항 개정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석탄화력 계획예방정비 계통분리시 석탄저장조 잔여탄소진을 위한 계통분리 지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 석탄화력 계획예방정비 계통분리시 석탄저장조 잔여탄소진을 위한 계통분리 지연 허용을 위한 별표2 및 별표4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계통연결/분리시 허용오차 신설에 대한 경과조치) 계통연결/분리시 허용오차 신설을 위한 별표2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거래비용에 관한 개정규정 적용례)

- ① 이 규칙 중 배출권거래비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 배출권 거래분부 터 적용한다.
- ② 제3.4.3조 제4항의 재정보증금액 산정식 중 전년도 배출권 평균단가는 2015년에 한하여 거래개시 희망일 1개월 전까지의 배출권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제3조(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량 평가 및 입찰방법 개선 적용 시점에 대한 경과

조치) 제12.4.2.3조, 12.5.2.3조, 12.5.2.4조, 별표28의 3.1.1조, 3.2.1조 중 수요 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량 평가 및 입찰방법 개선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5.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저장장치 성능검증 등을 위한 경과조치) ① 제4.2.1.3조, 제5.1.1조, 제5.6.1조의 개정규정은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의 성능검증기간을 고려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송전사업자는 동 기간 내에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성능검증을 완료하고, 동 설비의 기술적 특성에 관해 비용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적용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 ④ 전력거래소는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발전계획 수립용 프로그램 및 계통운영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시점까지 보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부 칙 (2015.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전지시 허용오차 변경안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급전지시 허용오차 변경을 위한 별표 2 정산기준 개정사항은 규칙 시행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시스템을 보완 하고 동 기간 내에 시행한다.

제3조(공급인증서 관련 비용평가위원회 심의·의결사항 개정안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공급인증서 관련 비용평가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변경을 위한 제2.2.1.4조 개정사항은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에 회원사에 대한 정보제공 규정 신설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계통안정화장치 실시간 자료취득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계통안정화장치 운전상 대 실시간 자료취득을 위한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의 자료취득기준 개정사항은 2016년 12월까지 설비를 보완하고 동 기간 내에 시행한다.

제5조(제약발전 정산시 허용오차 적용 조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약발전 정산시 허용오차 적용 조정을 위한 별표 2 정산기준 개정사항은 규칙 시행 시점부터 3개월이내 시스템을 보완하고 동 기간 내에 시행한다.

### 부 칙 (2016. 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저장장치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본 개정규칙은 관련 규정의 정비, 가격결정발전계획 및 운영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보완 기간을 고려하여 2017.1.1.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적용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제3조(복합발전기 계통제약 정산금 산정기준 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복합발전기 계통제약 정산금 산정기준 개정을 위한 별표 2 정산기준 개정사항은 5월 1일 거래일부터 적용하다.

제4조(열공급발전기 정산금 산정기준 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열공급발전기 정산금 산정기준 개정을 위한 별표 2 정산기준 개정사항은 5월 1일 거래일부터 적용한 다.

제5조(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기준 신설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4.2.1.1조 제11호 및 별표2의 개정규정 중 화력발전기의 지역자원시설세 정산 부분은 공고한날부터 4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전기별 납부실적을 제출(최초1회)받아정산플래그를(LPTF<sub>i</sub>)를 결정한 후 익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공고일 기준 4개월 이내에 납부실적을 제출(최초 1회)한 발전기의 경우에는 결정된 정산플래그(LPTF<sub>i</sub>)를 4월 1일 거래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정산하며, 공고일 기준 4개월 이후에 납부실적을 제출한 발전기의 경우에는 제출일 기준 익월 1일부터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6조(정산금 통지서, 거래대금 등 청구/요청서 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정산금 통지서, 거래대금 등 청구/요청서 개정을 위한 별지 서식 개정사항은 4개월 이내 시스템을 보완하고 동 기간 내에 적용한다.

제7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통합 관련 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신재생에 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통합 관련 개정을 위한 제11.1.6조 제2항 제1호 및 별표25의 6.1.1.1의 개정사항은 2016년 3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용평가 프로세스 전산화에 따른 비용자료 제출 방법 변경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비용자료 제출 방법 변경을 위한 제2.1.1.2조의 개정사항은 7월 1일 거래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6.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4.4조의 정산상한가격 산정을 위한 발전기의 열소비율은 신규발전기의 기준용량가격 산정방안 개정 전 까지는 현행 기준발전기의 열소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4.3조에도 불구하고 비

용위원회에서 재산정한 기준용량가격은 규칙개정 공고월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량가격계수 개정안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2.4.3조 규정에 의한 용량가 격계수의 지역계수(LF)는 다음의 연도별 완화계수를 이용하여 적용한다.

- ① 적용값 = 1 (1 지역계수) × 연도별 완화계수
- ② 연도별 완화계수

산출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완화계수	33%	67%	100%

제5조(연료전환성과계수 신설안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2.4.3조 규정에 의한 연료전환성과계수는 다음의 연도별 완화계수를 이용하여 적용한다.

- ① 적용값 = 1 (1 연료전환성과계수) × 연도별 완화계수
- ② 연도별 완화계수

산출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완화계수	20%	40%	60%	80%	100%

## 부 칙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석연료사용률 등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2016. 5. 12.) 제5조(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기준 신설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사용률 등을 반영한 제4.2.1.1조 제11호 및 별표2에 따른 화력발전기 지역자원시설세 정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 1.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한 발전기를 보유한 전기사업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납부실적을 제출받아 익월 1일 거래일부터 지역자원시설세 정산플래그(LPTFi)를 변경하여 정산을 시행한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규칙 공고 이전 납부실적을 제출한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납부실적을 확인하여 2016. 4. 1.일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정산한다. 다만 2016. 4월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실적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된 과세기간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정산한다.
- 3. 규칙 공고 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유권해석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실적 제출 이후 정산을 시행하되,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은 제2호에 따른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유권해석에 따른 정산은 2017. 12. 31.로 한정하여 시행한다.

#### 부 칙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7.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적용례)** 제2.3.2의2조 제1항 제1 호는 2017년 6월1일(전력거래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RPS 의무이행비용 정산대상 발전기 변경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대상 발전기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은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전력거래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동 기간 내에 적용한다.

제3조(전기저장장치의 등록기준 중 단서조항에 대한 세부 용량기준) 주파수조정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최대발전용량이 5MW를 초과하고, 비용 평가세부운영규정에 정한 연속운전을 충족할 경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등록 한다.

**제4조(정부승인차액계약 관련 규칙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별표30의 8.1.1과 8.1.2의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거래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 ② 전력거래소는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시스템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시행일 이후 정산시스템의 보완 및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행일 이전 정산기준을 적용하여 우선 정산하고 정산시스템 보완 및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2018. 1. 1일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5조(차액계약 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의 취득 및 활용) 전력거래소는 전기판매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를 차액계약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시기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기준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는 제2.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규칙이 개정·공표된 이후로 유예한다.

### 부 칙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요반응자원의 등록 및 전력거래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2.2.2조, 제12.2.3조, 12.4.1.1조의 등록 및 전력거래기간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기준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중인 수요관리사업자, 수요반응자원 및 수요반응참여고객에 적용하여 전력거래 종료시점을 2018년 11월 30일로 한다.

제3조(수요반응자원의 등록시험 경과조치) 제12.3.1.2조의 ②항의 개정사항은 2018

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8.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SEP, GSCON 등 정산금 산정관련 규칙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SEP, GSCON 등 정산금 산정관련 별표2(정산기준)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 부 칙 (2018.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요건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 ① 2018년 10월 31일까지 수요반응자원을 등록한 수요관리사업자는 2018년 11월 30일까지 제12.2.3조 제3항에 따른 병렬운전조작합의서 및 별지 제102호 서식에 따른 수요반응참여 고객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자가 2018년 11월 30일까지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전이 발급한 접수증으로 갈음하되,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력거래소는 등록을 취소한다.
- ③ 전력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취소된 고객 또는 자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분의 기본금 및 실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019년 1월 1일부로 등록 취소된 참여고객 감축량을 반영하여 자원용량을 재산정한다. 단, 자원용량 재산정시 용량기준은 2018년 11월 등록시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④ 2018년 12월 감축시험 평가는 제3항에 의거 재산정된 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1차 재시험은 2019년 1월에 시행한다.

### 부 칙 (2018.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금 산정관련 규칙 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 정산금 산정관련 별표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및 별표2(정산기준)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제3조(전력거래대금 결제업무 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본 개정규칙에 따른 정산 및 결제 절차 변경은 시스템의 보완·개발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 1월1차 청구 및 결제분부터 시행한다.

제4조(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에 관한 개정(안) 경과조치) 본 개정규칙은 전기

사업법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의 구역수요 초과 공급가능용량 입찰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칙 제3.3.1.1조에 따른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의 구역수요 초과 공급가능용량 입찰은 공고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입찰시스템 등을 개발·보완하고 동기간 내에 시행한다. 단, 동 시점까지 발전량 계량설비, 실시간 자료취득장치 및급전전화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설비 설치가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9.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시험 적용시점에 대한 경과조치) 제2.1.1.7조 2항에 따른 성능시험은 규칙개정 공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A급 계획예방정비 또는 A급계획예방 정비에 준하는 성능개선 공사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개선 활동비용의 열량단가 반영 관련 규칙 개정 적용을 위한 경과조치) 본 규칙개정에 따른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등 하위규정의 개정 및 관련시스템 보완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제4조(계약시장 매매거래 방식에 대한 경과조치) 제11.1.7조의 개정사항은 관련 시 스템을 보완하여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제5조(계통제약운전 정산기준 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복합발전기 계통제약정산 금 산정기준 개정을 위한 [별표2] 정산기준 I.12.사.의 개정사항은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2019년 6월 1일 거래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9. 1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354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조(국민DR 전력량계 취득 주기) 국민DR 수요반응참여고객에 한하여 제12.2.3 조 제2항 제3호의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의 사용전력량 원격검침 취득 주기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2021년 11월 30일까지는 취득 주기를 한시적으로 1시간으로 하며, 제12.4.3.1조의 국민DR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은 매시정각에만 발령한다.

제3조(국민DR 실시간 감시기기 설치) 국민DR 수요반응참여고객에 한하여 제12.2.3 조 제2항 제5호의 실시간 사용전력량을 검침할 수 있는 감시기기의 설치는 2021 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민DR 등록)** 제12.2.2조 제1항 제2호의 국민DR 초기 등록신청 기간은 2019년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초기 등록 신청기간	등록 완료일	초기 전력거래기간
홀수년도 11월 15일 ~	홀수년도	홀수년도 12월 1일 ~
11월 20일	11월 30일	다다음해 11월 30일

제5조(국민DR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 제12.2.3조 제1항 제2호의 국민DR 수요반 응참여고객 등록신청 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구분	신청기간	거래 적용일
	11월 15일 ~ 11월 20일	12월 1일
동계	12월 15일 ~ 12월 20일	1월 1일
5/11	1월 15일 ~ 1월 20일	2월 1일
	2월 15일 ~ 2월 20일	3월 1일
	4월 20일 ~ 4월 30일	6월 1일
하계	6월 15일 ~ 6월 20일	7월 1일
	7월 15일 ~ 7월 20일	8월 1일
	8월 15일 ~ 8월 20일	9월 1일

제6조(국민DR 정산) 국민DR 제도 도입 초기 수요반응참여고객들의 시장참여 유도를 위하여 별표 26의 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 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 시 국민DR의 최소 의무감축용량 이상 이행 의무를 2021년 11월 30일까지 면제하여 정산한다.

제7조(국민DR 전력거래자 등록) 제12.2.1조 제1항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로서 전력거래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 국민DR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등록신청 기한은 2019년에 한하여 부칙 제4조의 초기 등록 신청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 57, 58, 59, 59의2, 59의3, 59의4, 59의5, 59의6, 59의7 60, 61, 61의2 및 제4.2.1.3조, 제5.1.4조, 제5.1.6조, 제5.1.7조, 제5.6.1조, 별표1, 별표2의 9(보조서비스에 대한 정산), 별표3의 1.0(운영예비력 운영 기준)과 19.0(속응성자원 운영 기준), 별표9의 7.2.2.2, 7.2.2.3, 7.2.2.4, 7.2.5, 별표10의 5.2, 7.3.1.1, 7.3.2, 별표11의 5.1, 7.3.2, 7.3.3.1, 7.3.4, 7.5.3. 7.5.4, 별표12의 5.2, 7.2.1.1, 7.2.1.5, 7.2.2.1, 7.1.2, 별표19의 5.4, 5.5, 5.9, 7.3.5, 7.6.3, 7.7.2, 7.7.3, 8.1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 해제 시 입찰자료 변경시간 조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2.3.3조 제①항의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 해제 시 입찰자료 변경시간 개정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관련 시스템을 보완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 전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 해제에 따른 입찰자료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전사업자는 별표4(입찰운영절차) 6.3.1.6 의거 입찰자료를 입찰운영담당자 및 입찰시스템 운영담당자에게 별도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조(양수발전기 정산기준 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2(정산기준)의 양수 발전기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2. 공급가능용량의 정산, 다. 양수발전기) 및 양수동력에 대한 정산(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3. 양수발전기의 양수동력 정산)의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요건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2019년 10월 31일 까지 수요반응자원을 등록한 수요관리사업자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제12.2.3조 제3항에 따른 전력시장 필수정보 고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REC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REC 소유권 이전 관련 별표25의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제6조(계량설비 설치기준 완화에 대한 경과조치) 계량설비 설치기준 완화,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에 대한 개정사항은 완화된 전력량계의 계량 및 통신설비를 적용 가능한 전력거래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격제한폭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가격제한폭 적용 관련 별표25의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제8조(계통안정화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8.5조제6항 및 별표13의 7.2.1.1에 규정된 계통안정화장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축한다. 다만, 규칙개정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폐지대상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대체 급전전화 통신망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13의 붙임8.7에 규정된 대체 통신수단 중 위성급전전화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구축한다.

② 별표13의 붙임8.7에 규정된 위성전화, 휴대용 무선전화, 일반용 유선전화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축하되, 자가 위성주파수를 활용할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다.

제10조(기존 시험기관의 등급적용) 별표31 시행시 종전의 규정(발전기 기술특성 시험 관리지침, 2012. 7. 2)에 의하여 인증된 시험기관 및 기술이전기관은 동일 하게 지정된다. 다만, 2등급 시험기관은 1등급 시험기관으로, 3등급 시험기관은 2 등급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발전설비 특성시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시험기관 및 대상사업자는 본 지침 시행 후 3개월 까지 종전의 규정의 시험기관 등급과 등급별 시험가능 용량에 따른 특성시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부 칙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1.1조, 제2.2.1.4조, 제2.3.4조, 제10절 기술평가위원회, 제18.3조, [별표 4], [별표 6], [별표 31]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제주 비중앙급발전기 가격결정발전계획 반영방법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주 신재생예측시스템과 전력거래 입찰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시스템 변경을 위해별표 6 제주 비중앙급전발전기 가격결정발전계획 반영방법 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복합발전기 입찰기준 및 가격계획 반영방법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전력거 리 입찰시스템 변경을 위해 별표 4 및 별표 6 복합발전기 입찰기준 및 가격계획 반영방법 개정은 규칙 공고 후 5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제4조(발전기정비관리시스템과 연계한 공급가능용량 입찰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발전 기정비관리시스템과 전력거래 입찰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시스템 변경을 위해 별표 4 발전기정비관리시스템과 연계한 공급가능용량 입찰기준은 규칙 공고 후 5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제5조(차등기본정산금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2.6.1.2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까지 수요반응자원의 연료전환성과계수는 1.0으로 적용하고, 기본정산금 차등정산은 2020년 6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본정산금 차등을 위한 감축실적은 2019년 12월 거래분부터 인정한다.

제6조(연료전환성과계수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중소형DR 수요반응자원에 한하여 연료전환성과계수는 다음의 연도별 완화계수를 이용하여 적용한다.

- ① 적용값 = 1 (1 연료전환성과계수) × 연도별 완화계수
- ② 연도별 완화계수

산출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완화계수	33%	67%	100%

제7조(자발적 수요감축 제도 추가신설에 대한 경과조치) 수요관리사업자는 6차년 도 수요반응자원 추가등록기간(2020년 4월 20일~ 4월 30일)에 한하여 초기등록 수요반응자원 의무감축용량의 하향조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의 열량단가 반영 관련 규칙 개정 적용을 위한 경과조치 등)① 본 규칙개정에 따른 발전기별 연료의 열량단가는 시행에 따른 전력시장 영향분석, 하위규정의 개정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고일의 익월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칙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시행일의 직전 일까지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등에 정한다.
- ③ 전력거래소는 개정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규칙 시행 전에 제2.1.1.4조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2020.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32 8.2 및 9.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을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5.11.1조 제2항 1호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 신규로 접수된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신규로 신청한전력수급계약(PPA)에 각기 적용한다. 다만, 기설 설비의 경우에도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조례 등에 의하여 해당 요건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재생에너지정보공유시스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2의 11.2에 규정된 재생에 너지정보공유시스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비를 보완하고 동 기간 내에 시행한다.

**제4조(전력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2.2조는 공고일 이후 위촉하는 신임 위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0.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의 정산 및 결제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25의 6.3은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신재생 통합포털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보조서비스 정산기준 일부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보조서비스에 대한 정산

기준 관련 별표2의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고장정지 발전기 공급가능용량 변경 확인에 대한 경과규정) 별표4의 제9.7.6.2 조 규정에 의한 고장정지 시 발전기 공급가능용량 변경 확인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고정출력 제약입찰 발전기의 변경입찰에 대한 경과규정)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규칙개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제14장, 별표1, 별표2, 별표8, 별표9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규칙 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동일 지역 및 송배전망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14.2.2조와 관련하여 동일 지역 및 송·배전망 구분에 대한 적용은 예측제도에 참여하는 보유자원 증가 및 전력 계통·시장 운영에 있어 지역 및 송·배전망 구분이 필요한 시점까지 유예한다.

제4조(운영발전계획 반영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9 7.2.1.1의 예측발전량에 대한 적용은 예측제도에 참여하는 대상자원의 3개월(월의 말일기준)의 예측오차율을 산술 평균한 값이 8% 이하인 때로부터 적용한다. 여기서, 3개월 평균 예측오차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평균 예측오차율은 해당기간 중 대상자원 내 주요자원의 설비이용률이 10% 이상인 시간대의 예측오차율을 산술 평균한 값이다.
- 2. 대상자원에 대한 시간대별 예측오차율은 대상자원 내 주요자원의 설비용량에 대한 보유자원 예측발전량과 계량전력량의 차이의 절댓값의 백분율(%)이다.

제5조(입찰자료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입찰규정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입찰자료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입찰규정 개정은 전력거래 입찰시스템 등의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적용범위) 제5장 9절, 별표3, 별표9, 별표18, 별표13, 별표32는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전력수급계약(PPA)을 신규로 신청하는 설 비에 적용한다.

제7조(연료전지발전기의 정지계획 및 발전계획 제출에 대한 경과조치) 규칙 제 5.9.1 조, 제5.9.6조, 별표9 제7.1조, 별표18 제7.2조, 제7.3조, 제7.4조, 별표32 제10.7 조의 개정사항은 연료전지 발전기 정지계획 및 발전계획 제출 세부운영절차와 관

런 전산시스템이 도입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0.10.1부터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전력수급계약(PPA)을 신규로 신청하는 설비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2020.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기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13개월간 초기 전력거래기간을 운영하고,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추가 전력거래기간을 운영한다.

제3조(주파수DR 등록) 제12.2.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한해 신규 주파수 수요반응자원을 확보한 자는 아래와 같이 추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추가 등록 신청 기간	추가 등록 완료일	추가 전력거래기간
2월15일~2월20 일	2월28일	3월1일~11월30일

제4조(주파수DR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 제12.2.3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1 년 춘계 기간에 한해 아래와 같이 주파수DR 수요반응참여고객을 등록할 수 있다.

구분	신청 기간	거래 적용일
춘계	2월15일~2월20일	3월1일

제5조(사용전력량 데이터 전송) 제12.2.3조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주파수DR 수 요반응참여고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1년 11월 30일까지 전력량계 사용전력량 데이터를 별도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다.

# 부 칙 (2020.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12.1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기예비력 입찰 및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비상대기예비력 입찰시스 템 구축 전까지의 비상대기예비력 입찰은 별지 122호 서식에 따라 공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후 비상대기예비력 정산은 정산시스템 구축 후 시행하며, 정산 일 정은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한다. 단, 이 규칙 시행일 이전의 정산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칙 및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까지 최초 정산한다.
- ③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의 구역전기사업자의 비상대기예비력 부담분은 발전사업자의 정산금에서 제외한다.

제3조(정산조정계수 연간 적용범위(0<π≤1) 내에서의 정산금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한 해당년도의 정산조정계수 연간 적용범위(0<π≤1) 내에서의 정산금 조정은 해당년도 말일까지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이 규칙을 적용하며, 적용시기 전까지의 구역전기사업자의 부담분은 발전사업자의 정산금에서 제외한다.

## 부 칙 (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계좌 등록 및 변경 절차 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본 개정규칙에 따른 정산계좌 등록 및 변경 절차는 시스템 개발 기간 및 시범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2021.2.1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운전 급전지시 시 미입찰에 대한 정산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칙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태양광 전기사업자 최초 전력거래시점 개정안 대한 경과조치)** 본 규칙개정에 따른 제1.2.5조, 제4.1.5조 및 보칙 제21.2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0.12.1.부터 시행한다.

제5조(플러스DR 등록 및 전력거래기간) 제12.2.2조 제1항 제1호의 플러스DR 초기 등록 및 초기 전력거래기간은 2021년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초기 등록 신청기간	등록 완료일	초기 전력거래기간
2월1일~2월20일	2월28일	3월1일~11월30일

제6조(플러스DR 추가등록) 제12.2.2조 제4항 제3호의 플러스DR 추가 등록 및 추가 전력거래기간은 2021년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추가등록 신청기간	추가등록 완료일	추가 전력거래기간
4월20일~4월30일	5월31일	6월1일~11월30일
8월15일~8월20일	8월31일	9월1일~11월30일

제7조(실계통기반 하루전 시장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12장,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8, 별표19, 별표22, 별표23, 별표24, 별표26의 실계통 기반 하루전시장 도입과 관련된 규정은 정산시스템 등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2022년 9월 1일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28., 2022.6.30.>

제8조(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과 관련된 규정의 경과조치) 제1 장, 제2장, 별표1, 별표2, 별표6, 별표7, 별표20의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과 관련된 규정은 정산시스템 등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제 7조에 따른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전력거래시스템 (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6.30.>

## 부 칙 (2021.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제3.4.1조, 제3.4.3조, 제11.2.3조, [별표 25]의 의무이행비용정산 관련 규정은 2021년 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부터 적용한다. 단, 2021년 전력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행비용 산정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전력량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관련공고 : 산업통상 자원부공고 제2021-247호) 공포일 이후의 구매전력량으로 한다.

**제3조(월간정산에 대한 경과조치)** 판매사업자 외 전력구매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월간정산은 첫 시행년도에 한해 유예하고 연간정산으로 갈음한다.

**제4조(연료전환성과계수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연료전환성과계수 산정기준 개정규정은 규칙개정일 이후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쟁조정 절차 개정규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미 신청된 분쟁에 대하여는 제7장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2021.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의 자발적DR 규칙개정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제5장, 제12장, 별표4, 별표8, 별표26,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의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자발적DR 개정과 관련된 규정은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에 공지하는 날로부터시행하다.

제3조(수요반응자원의 입찰제한 횟수 산정 경과조치) 제12.4.2.6조의 수요반응자원 자발적 수요감축에 대한 입찰제한 예고 조치는 8차년도 거래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11월 30일)에 한해 다음 각 호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 시행한다.

- 1. 2021년 12월 1일~제2조에 의거한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의 직전일까지의 가격결정발전계획에 따른 수요감축 감축시행일별 평균 감축이행 률이 80% 미만인 횟수
- 2. 제2조에 의거한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2022년 11월 30일의 자발적 수요감축 감축시행일별 평균 감축이행률이 80% 미만인 횟수

제4조(수요반응자원의 실적감축시간 산정 경과조치) 별표26의 수요반응자원의 실적 감축시간은 8차년도 거래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11월 30일)에 한해 다음 각 호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1. 2021년 12월 1일~제2조에 의거한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의 직전일까지의 일별 전력거래중인 수요반응자원별 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 청(감축시험 및 감축재시험은 제외)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 감축이행인 정량, 가격결정발전계획에 따른 거래일별 감축량, 기준수요 초과에 따른 거래 일별 감축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거래일별 감축량의 합산량을 일별 의무감 축용량으로 나누고 해당 기간에 대해 합산한 값
- 2. 제2조에 의거한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2022년 11월 30일의일별 전력거래중인 수요반응자원별 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감축시험 및 감축재시험은 제외)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 감축이행인정량,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거래일별 감축량의 합산량을 일별 의무감축용량으로 나누고 해당 기간에 대해 합산한 값

제5조(제주지역 REC 변환가격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주지역 REC 변환가격 적용 관련 별표1 및 별표25의 개정사항은 시스템 개발 기간 및 시범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서 전력거래시스템에 공지한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까지 제주지역 REC 변환가격은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제18장 18.5.3의 제주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따른다.

제6조(시장기준예비율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시장기준예비율 신설에 따른 공급용량계수(ICF) 산정방법 개정규정은 규칙개정일 이후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장, 별표1, 별표 2, 별표8, 별표9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규칙 개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 (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양수발전기 정산기준 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2(정산기준)의 양수발전기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2. 공급가능용량의 정산, 다. 양수발전기)의 개정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6의 수요반응자원의 발전기여도는 2022년 6월 연료전환성과계수 산정 이후 적용하고 제12.5.2.3조, 별표26, 별표28의 국민DR 수요감축 및 플러스DR 수요증대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규칙개정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 제도의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1장, 제3장, 별표1, 별표2, 별표8의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과 관련된 규정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규칙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하다.

제3조(석탄발전기 상한제약 입찰규정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규칙 개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 (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열공급발전기의 주피수조정운전 참여규정 명확화) 별표3 15.1.2 및 15.1.6 열공급발전기 주파수조정운전 참여규정은 계통평가위원회를 통해 발전기별 기술특성을 의결 받은 후 시행한다.

제5조(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중앙급전 적용을 위한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IGCC 기술요건에 관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이 개정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정산기준 및 입찰운영절차에 대한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 적용범위)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IGCC)는 [별표 2] 정산 기준 및 [별표 4] 입찰 운영 절차에 대해 복합발전기에 준하여 적용하다.

## 부 칙 (2022.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지역 수요자원시장 분리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제5장, 제12장, 별표4, 별표12, 별표26, 별표28의 제주지역 수요반응자원 분리 운영과 관련된 개정사항과 제12장, 별표26의 플러스DR 당일 시장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관련시스템을 보완하여 규칙개정 공고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주권 수요반응자원의 기준감축시간 산정 경과조치) 별표26의 제주권 수요반 응자원의 기준감축시간은 11차년도수요자원시장 거래종료일(2025년 11월 30일) 까지 수도권, 비수도권 수요반응자원의 기준감축시간과 동일하게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주권 수요반응자원의 제주지역 RCP 적용 경과조치) 9차년도 수요자원시장 거래시작(2022년 12월 1일) 전일까지 제주지역 RCP 재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재산정 시점까지 별표26의 제주권 수요반응자원의 RCP는 육지지역 RCP를 적용하다.

제5조(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의 정산금 관련 규칙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1장, 제3

장, 제4장, 별표1, 별표2, 별표8의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관련된 규정은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규칙 개정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적용한다. 단, 별표2에 따른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은 관련 시스템이 완비된 후 재생에너 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6조(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용량정산금 산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1장, 제2장, 별표1, 별표2의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용량정산금 산정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6개월이내에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실효용량비율 산정기준 의결 후 전력거래시스템 (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공급인증서 거래회원 서류접수 전자화 규정 적용에 대한 시행일) 공급인증서 거래회원 서류접수 전자화 적용 관련 제11.1.4조 및 별표25, 별지 제96호, 별지 제97호의 개정사항은 시스템 개발 기간 및 시범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서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포털 및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등에 공지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료전환성과계수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칙 개정 사항은 부칙 (2021.1.1.) 제7조(실계통기반 하루전 시장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과 동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부칙(2021.1.1) 제7조에 따른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시행일 또는 규칙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중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 부 칙 (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뢰도발전계획 정보공개에 대한 경과조치) 제5.1.3조 제3항에 따른 신뢰도발 전계획 정보공개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규칙개정 공고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3조(기준수요 초과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장의 기준수요 초과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규칙개정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425호「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의 시행일과 동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발전기 설비용량 검증 등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 제도의 도입 규칙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1장, 제4장, 별표1, 별표2, 별표7의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관련 규정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이하 직접PPA고시")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 시행한다.

제4조(공급과잉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최소발전용량 규정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전력 거래소는 규칙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시스템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 부 칙 (2022.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유지기능 증빙자료 제출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별표 32 6.4의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유지기능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시행일 이전 설비 구매 계약서 등 선구매 증빙자료를 제출한 발전사업자, 인증시험 등을 위해 시제품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제2.4.4조의3, 제3.1.1조, 제3.2.1.1조, 제3.3.2.1조, 제4.2.1.1조, 제4.2.1.6조, 제11.1.1조, 제11.1.7조, 제18.2조, 별표1(고정가격계약 계약단가), 별표2, 별표 8, 별지 제89호, 별지 제89-1호의 개정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730호에 따라 공고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757호에 따라 공고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 개정 및 시행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별표1(제주 신재생 설비월별 정산단가 및 육지 월 가중평균 SMP), 별표25의 개정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425호「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가 개정 및 시행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2조, 제2.4.4조의3, 제3.1.1조, 제3.2.1.1조, 제3.3.2.1조, 제4.2.1.1조, 제4.2.1.6조, 제11.1.1조, 제18.2조, 별표1(고정가격계약 계약단가), 별표2, 별표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1.7조의 개정규정은 공급인증서 계약시장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

③ 별지 제89호, 별지 제89-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공급인증서 계약시장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고정가격계약의 정산상한가격 관련 규칙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전력거 래소는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및 전력거래시스템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및 전력거래시스템의 보완이 완료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2022. 11. 30. 부분개정)에 따라 정산하고, 시스템의 단계적인 보완 및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 ③ 제1.1.2조, 제2.4.4조의3, 제3.1.1조, 제3.2.1.1조, 제3.3.2.1조, 제4.2.1.1조, 제4.2.1.6조, 제11.1.1조, 제11.1.7조, 제18.2조, 별표1(고정가격계약 계약단가), 별표2, 별표 8, 별지 제89호, 별지 제89-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2022. 11. 30. 부분개정)을 적용한다.
- 1.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에서 선정되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상반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참여신청을 완료한 경우

제4조(초과급전 공급가능용량 정산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2 정산기준의 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 12.기타정산의 나.입찰량을 초과하여 급전지시한 발전기의 정산은 2022년 9월 1일(전력거래일 기준)부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5조(거래기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추가 전력거래기간을 운영한다.

제6조(주파수DR 수요반응자원 등록) 제12.2.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한해 신규 주파수 수요반응자원을 확보한 자는 아래와 같이 추가 등록신청을 할 수있다.

추가 등록 신청 기간	추가 등록 완료일	추가 전력거래기간
2월15일~2월20일	2월28일	3월1일~11월30일

제7조(주파수DR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 제12.2.3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춘계기간에 한해 아래와 같이 주파수DR 수요반응참여고객을 등록할 수 있다.

구분	신청 기간	거래 적용일
춘계	2월 15일 ~ 2월 20일	3월 1일

제8조(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혼합자원 반영을 위한 규칙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14.4.2조, 별표1, 별표2의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규칙개정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 포털(der.kmos.kr)에 공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PFR-ESS 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별표19 전기저장장치의 1차예비력 산정방식 개정사항은 제2.1.1.1조 및 별표3 전기저장장치의 보조서비스 참여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성시험 시행 후 계통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받은설비에 적용한다. 단, 전기저장장치의 특성시험 규정 마련 전까지 특성시험 결과를 제작사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전력거래소는 규칙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시스템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최소발전용량 이하 운전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별표11 7.1.5 및 7.3.3.2 최소발 전용량 이하 운전 관련 실시간 급전운영 절차 규정은 계통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소발전용량 이하 운전 기술특성을 의결 받은 후 시행한다.

- ② 별표12 7.1.7의 규정 삭제에도 불구하고 ①항의 시행일 전까지 제주지역 비상시 급전지시 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전력거래소는 규칙개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련 시스템 보완을 완료하여 야 한다.

제11조(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계량에 관한 특례) 제4.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전력거래 중인 자가용설비설치자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24개월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제12조(중소형DR 통합입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장의 중소형DR 통합입찰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규칙개정 공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수요반 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6.30.>

제13조(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참여 확대를 위한 규칙개정 대한 경과조치) 제1장, 제4장, 별표1, 별표2 및 별표7 중 직접전력거래비율과 관련된 사항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제1조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비율 반영을 위한 규칙개정 경과조치) 별표2 중 직접전력거래비율과 관련된 사항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제1조 따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5조(대체 급전전화 통신망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3의 붙임8.7에 규정된 위성전화, 휴대용 무선전화, 일반용 유선전화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축한다.

### 부 칙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 순연과 관련된 규정의 경과조치)

부칙(2021. 1. 1.) 제8조(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과 관련된 규정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제1장, 제2장, 별표1, 별표2, 별표6, 별표7, 별표 23의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과 관련된 규정은 전산시스템 개발·점검 및 모의운영을 위해 2023년 11월 1일 이내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은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10영업일 이전에 사전 공지한다.

# 부 칙 (2023.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정산상한가격 기간 복합발전기 정산기준 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복합발전기 계통제약정산금 산정기준 개정을 위한 [별표2] 정산기준 I. 12. 파.의 개정사항은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22년 12월 1일 거래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관련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14.2.3조, 제14.3.3조 및 제14.3.4조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 전력신사업비즈니스플랫폼(der.kmos.kr)에 공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규정 명확화를 위한 규정의 경과조치) [별표2]의 4. 기동비용조정에 대한 정산, [별표2]의 12. 기타정산, [별표2]의 16.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 판단기준, 별지 제5호, 별지 제33-2호, 별지 제33-3호 관련 규정은 부칙(2023. 2. 28.) 제2조(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 순연과 관련된 규정의 경과조치) 시행일과 동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감축신뢰성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장,별표1,별표26의 감축신뢰성시험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10차년도 거래기간(2023년12월1일~2024년11월30일)부터 적용하다.

제5조(주파수DR 계량 기준 완화 및 시험규정 신설에 따른 규칙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12.2.2조, 제12.2.3조, 제12.3.2.2조 및 별표26의 주파수DR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규칙개정 공고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3. 8. 30.)

제1조(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장 및 별표3, 별

표4, 별표5, 별표8, 별표13, 별표33, 별표34의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도입과 관련된 규정 및 제12장 및 별표26의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도입에 따른 DR규칙개정과 관련된 규정은 전산시스템 개발·점검 및 모의운영을위해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은 시행하기 30영업일 이전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을 통해 사전공지하며,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시범사업 도입에 따른 DR규칙개정과 관련된 규정의 시행일은 15영업일 이전에 전력거래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지한다.

제2조(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발전기의 전력시장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규칙 제17.1.5조 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에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한 수소발전 입찰시장 계약발전기 중 제1.1.2조 제1호의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발전기는 중앙 급전발전기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전력거래소는 규칙개정 공고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한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발전기 중 제1.1.2조 제1호의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발전기를 중앙급전발전기로 전력시장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관련 사항의 보완을 완료하여 제1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시행하기 30영업일 이전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을 통해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 및 정산명세서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17장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 및 차액계약정산금 정산명세서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규칙개정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을 통해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경과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전까지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은 수기로 정산하되, 세부사항은 전력거래소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4조(설비용량 1MW초과 비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한 경과 규정) ① 제2조의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시행일 이전 상업운전을 개시한 1MW 초과 비중앙급전발전기는 제16.3.2조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 제2조의 시행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1MW 초과 비중앙급전발전기는 제 16.3.2조 제5항 규정을 시행일로부터 1년 뒤 적용한다.

제5조(예측제도 경과조치) ① 제14장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는 제16장 제2절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이하 "입찰제도")가 도입된 지역에 대하여 입찰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종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계통에 연결된 보유자원은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 1년간 예측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주계통 내 예측제도 대상자원에 적용하는 예측제도 정산단가 는 육지계통 내 예측제도 대상자원에 적용하는 정산단가의 50%를 적용한다.

- ③ 제2항의 예측제도 참여 가능기간 동안 제주계통 내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의 주요 자원 설비용량 합계 기준은 1MW 초과로 완화 적용한다. <개정 2024.2.13.>
- ④ 제2항의 예측제도 참여 가능기간 동안 전체 예측형 집합전력자원 중 육지계통의 예측형집합전력자원에 한하여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설비용량별 구성)을 적용한다. <개정 2024,2.13.>

**제6조(시범사업 유효기간)** 제16장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기 전(2025년 말 예정)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조(중소형DR 통합입찰 도입 순연과 관련된 규정의 경과조치) 부칙(2022. 12. 27.) 제12조(중소형DR 통합입찰에 관한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형DR 통합입찰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 개발·점검 및 모의운영을 위해 2024년 5월 1일 이내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은 10영업일 이전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을 통해 사전 공지하다.

# 부 칙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2조, 제5.1.1조, 제5.1.2조, [별표1], [별표9]의 7.4.4, 7.5.3, 7.5.4의 개정규정은 하루전발전계획 프로그램 개선이 완료된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래대금의 외국환 결제에 대한 경과조치) 본 개정규칙에 따른 외국환 결제는 시스템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질권설정 및 실행에 따른 전력거래대금 지급 관련 규정의 사후조치) 전력거래소는 별표8 7.11.6.9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설정사실이 통지된 질권에 관하여는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질권자로부터 질권설정 채권의 변제방식을 선택하는 확인서를 수취한다.

제5조(REC거래시장 참여제한 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5의 6.4.3.5 및 6.4.3.6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규칙개정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포털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3.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 순연과 관련된 규정의 경과조치) ① 부칙(2023. 2. 28.) 제2조(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 순연

과 관련된 규정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제1장, 제2장, 별표1, 별표2, 별표6, 별표7, 별표23의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과 관련된 규정은 제도도입 여건확보 및 제도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시행일 10영업일 이전에 전력거래시스템에 사전 공지한다.
- ③ 전력거래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제1항의 시행여건을 규칙개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제도 도입 순연에도 불구하고, 제16장 및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8, 별표13, 별표33, 별표34 등에서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과 관련된 규정에는 제1장, 제2장, 별표1, 별표2, 별표6, 별표7, 별표23 등에서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제도를 부칙(2023. 08. 30) 제1조 시행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 부 칙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4. 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자간 전력거래를 위한 등록신청 규정의 경과조치)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간 전력거래를 위한 등록신청은 관련 시스템 보완 후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수요반응자원의 거래 규정의 경과조치) ① (수요반응자원의 등록 신청기간) 제12.2.2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30일까지 수요반응자원 등록 신청기간은 아래 각 호를 따른다.

1. 표준DR, 중소형DR, 제주DR

구분	등록 신청기간	등록 완료일	전력거래기간
추가등록	4월20일~4월30일	5월31일	6월1일~11월30일

#### 2. 국민DR

구분	등록 신청기간	등록 완료일	전력거래기간
추가등록	매월 15일~20일 (단, 홀수년도 10월, 11월 제외)	매월 말일	완료일 익일부터 초기 전력거래기간 종료일

3. 주파수DR, 플러스DR

구분	등록 신청기간	등록 완료일	전력거래기간
추가등록	2월15일~2월20일	2월28일 (윤년29일)	3월1일~11월30일
	4월20일~4월30일	5월31일	6월1일~11월30일
	8월15일~8월20일	8월31일	9월1일~11월30일

②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 신청기간) 제12.2.3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30일까지 표준DR, 중소형DR, 제주DR, 플러스DR, 주파수DR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 신청기간은 아래를 따른다.

구분	신청 기간	거래 적용일
춘계	2월 15일 ~ 2월 20일	3월 1일
하계	4월 20일 ~ 4월 30일	6월 1일
추계	8월 15일 ~ 8월 20일	9월 1일

- ③ (수요자원시장의 통지서, 청구서 및 청구요청서 변경 적용례) 별지 제103호 내지 제104-2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30일 이내에 전산시스템 개 발 및 점검이 완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8.1.>
- ④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01-1호 내지 별지 제102-7호 서식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원시장 제10차(2023.12.~2024.11.)의 춘계등록(2024.2.)이전까지 수요관리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 및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서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 칙 (2024.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등록신청 규정의 경과조치) 제16.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시행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에 대한 등록신청 마감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로 한다.

제3조(설비용량 3MW초과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등록 의무 자원에 대한 경과 규정)

- ① 제16.1.10조, 제16.4.1조, 제16.4.3조, 제16.4.5조, 제16.4.7조, 별표34 7.5.2.1의 설비용량 3MW초과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미등록 발전기에 대한 규정은 제16.2.7조의 2024년 2차 전력거래기간부터 적용한다.
- ② 제16.1.10조제2항의 설비용량 3MW초과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미등록 발전기에 대해서는 16.3.2조제5항을 2024년 2차전력거래기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4.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지 플러스DR 규칙개정 사항에 대한 적용례) ① 제12장, 별표1, 별표8,

별표26, 별표28, 별지 제101-5호, 별지 제102-4호서식의 육지 플러스DR과 관련된 규정은 제12.2.2조 및 제12.2.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육지 플러스DR의 초기등록신청기간 및 초기 전력거래기간을 2024년에 한하여 별도 공지하여 운영할수 있고, 전산시스템 개선 전까지 수기로 운영한다.

- ② 제1항의 육지 플러스DR의 정산금은 반기별 8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제1항의 육지 플러스DR은 '25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단, 그이전에 육지 계통에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또는 신보조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운영 규모, 정산 방식 등을 재검토한다.

제3조(제약코드 관련 규칙개정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4 7.11.6의 개정사항은 시스템 보완 후 규칙 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4.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1.4.3.1조 및 1.4.3.3조의 개정규정은 전력계통신뢰도협의회 가결 후 도래하는 최초 영업일의 익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4.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 ① 별표2 I. 12. 아. 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보완 후 규칙 시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전력거래시스템의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제12.2.2조 제4항 및 제12.2.3조 제4항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의 수요반응자원 및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신청서 제출은 2024년 12월 31일 이내 수요자원전력거래시스템의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③ 수요자원거래시장의 예비계좌 설정 및 사용에 따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제2.3.2조, 별표4 6.3.1.3 및 6.3.1.3의1 개정규정은 시스템 보완 후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의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⑤ 별표 29 3.1의 RRMSE 검증대상일과 관련된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2.2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2.2.3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반응자원 및 수요반응참여고객의 제11차 초기 등록신청 기간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2024.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2조 제5항 제8호 개정규정은 시스템 보완 후 규칙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력거래시스템 (e-power market)의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중앙급전발전기 규칙개정 사항에 대한 적용례) ① 제18장, 별표1, 별표8, 별표9, 별지 31-8호, 별지 127호 등 준중앙급전발전기와 관련된 규정은 제18.2.3조, 제18.3.1조, 18.3.2조, 제18.4.4조, 제18.4.5조 및 제6절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운영기간에 한해서는 별도의 방법으로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스템 개선 전까지 수기로 운영한다.

② 제18장 준중앙급전발전기 운영에 관한 규칙은 육지 계통에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또는 비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한 보조서비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운영 규모, 정산 방식 등을 재검토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제18.2.2조의 계통안정화 성능 중 전압 조정 및 주파수추종 운전에 관한 사항은 발전기 및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에 시행한다. 단, 자동발전제어 등 기술개발에 장시간 소요가 예상되는 사항은 2025년 말까지 계통위원회를 통해서 별도 공지한다.

- ② 제18.2.3조제3항과 관련된 신재생자료취득장치의 정보취득 주기(2초)는 전산 시스템 개선이 완료된 후 시행한다.
- ③ 제18.3.3조의 지역 구분은 비수도권부터 적용하여 시행하며, 수도권의 적용은 계통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점까지 유예한다.
- ④ 제18.2.2조의 유연성기여도는 '24년 가을철 운영기간에는 70% 이하, '25년 봄철 운영기간에는 65% 이하로 적용하며, '25년 가을철 운영기간 부터는 60% 이하를 적용한다. 단, 유연성기여도가 60% 이하를 충족하는 못하는 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준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하기 전까지 공문을 통해 설비개선 계획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 ⑤ 제18.2.3조의 급전전화, 신재생자료취득장치 또는 원격소장치의 설치는 '24년 가을철 운영기간에 한하여 최초 전력거래개시 월의 말일까지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 부 칙 (2024. 10. 2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제11.2.1조의2 및 제11.2.8조부터 제11.2.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의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③ 제19장 및 별표26의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거래와 관련된 개정규정은 규칙개정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요자원 전력거래시스템(dr.kmos.kr)의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행일 이전 별도의 시범운영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해서는 운전유지비를 제외한 실 적급만 정산한다.
- ⑤ 별표25의 6.4.3.3, 6.4.3.5 및 6.4.3.6의 개정 규정은 시스템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규칙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의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계약시장 기계약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장 개정 전 체결된 중앙계약시장 계약분에 대해서는 본 개정사항을 반영한 변경계약 전까지 개정 전의 규칙제15장을 적용한다.

제3조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5.8.7조의 개정규정은 2022.12.28.일 이후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을 체결한 발전기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계량에 관한 특례기간 연장) 부칙(2022. 12. 27.) 제 11조(자가용설비설치자의 계량에 관한 특례)의 유예기간을 2025. 12. 31.까지 연장한다.

## 부 칙 (2024.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5.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1.1조, 제4.2.1.1조, 제4.2.4.1조, 별표1 및 별표2의 구역전기사업 전력량정산금에 대한 차등금액 제도와 관련된 개정규정은 정산시스템 등의 관련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규칙 시행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5, 2, 11.)

제1조(시행일) ① 제5.1.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의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4.1.3조, 제14.4.1조 및 별표2(V.예측제도 참여자에 대한 정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력신사업 비즈니스 플랫폼(der.kmos.kr)의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주요자원에 풍력을 발전원으로 포함한 경우 공지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을 1년 유예한다.

제2조(신뢰성DR 발령기준 변경 및 휴일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 사항에 대한 적용례) ① 제12장, 별표26, 별표28, 별지 제101-1호, 별지 제101-2호, 별지 제102-1

- 호, 별지 제102-5호 서식의 휴일 수요반응자원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규칙개정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때 휴일 수요반응자원의 초기 등록신청기간 및초기 전력거래기간 등을 별도 공지하여 운영할 수 있고,필요시 수기로 운영한다.
  - ② 제1항의 휴일 수요반응자원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사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후 운영 규모, 정산 방식 등을 재검토 한다.

## 부 칙 (2025. 4. 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제1장, 제3장, 제4장, 별표1, 별표2, 별표8, 별표30, 별지 39호, 별지 39-1호, 별지 40호, 별지 40-1호, 별지 78-1호, 별지 80-1호의 재생에너지전기공 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관련 규정은 정산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업자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03호 관련)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력신사업 비즈니스플랫폼(der.kmos.kr)에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③ [별표 2] I.1.다 및 I.3.나의 양수발전기 MP 적용 관련 개정규정은 차기 전력IT시스템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규칙 공고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의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④ 제12장, 별표11 및 별표16 및 별표26의 양수발전기의 주파수DR 관련 개정 규정은 규칙 공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dr.kmos.kr)의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구매자 거래유지기간 재검토)** 제3.2.2.6조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자의 거래유지기간은 이 규칙 공고일 다음날부터 3년마다 재검토 한다.

제3조(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 규칙개정 사항에 대한 적용례) 별표2, 별표8,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의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의 방법으로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스템 개선 전까지 수기로 운영한다.

제4조(복지특례할인비용 단가 관련 경과조치) 제3.2.1.1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일로부터 2025년도 6월까지 적용할 복지특례할인비용 단가는 공고일 전에 판매사업자가 산정하여 전력거래소에 서면 통지한다.

제5조(직접구매 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 사항에 대한 적용례) 제12.1.1조의 직접 구매자의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과 관련한 규정은 전력수요입찰이 도입될 경우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참여 범위 등을 재검토한다.

#### 부 칙 (2025.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관련 개정 규정은 분산특구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규칙 공고일부터 24개월 이내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제1항의 전산시스템 완비 이전에 분산특구 운영 등의 사유로 규칙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또는 정산 금액 항목별 과세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및 전력거래시스템에 별도로 공지한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 ③ 별표2의 "VIII. 분산특구 전력 직접거래에 대한 정산"에서 연간 청산 후 남은 차등금액은 법령에 관련된 사항이 명시될 때까지 보증금 계좌에 해당 금액을 예 치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